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2016. 12. 30., 타법개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 - 481 - 41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산림조합법」 제40조제8항제3호(「산림조합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위판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4. 9. 18.]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제2조에 따른 공개된 장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24.]

부칙 <제233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